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2일, 김선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의원)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

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은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과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및 공론조사 참여자 간에 큰 이견 없이 지지를 받은 방안임.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집행에 관한 과제로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분포 및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정확한 추가재

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2022년 납부재개자에 한정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예산 편성 당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와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어 시행 첫해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사각지대의 상세 현황을 조사하고, 정확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면밀한 제도설계와 사업평가로써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